



민법·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이혼 신청후 은행과 비즈니스에서 마구 돈 뺄수 있나

〈문〉 저는 40대의 두 딸을 둔 어머니며 작은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에 걸친 결혼 생활이란 남편의 심한 술사와 도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지난달에 제가 이혼을 신청했고 마켓을 새벽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혼이 신청되자마자 남편이 우리 부부 공동의 은행 계좌에서 6,000 달러를 뺐갔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는 가게 닫을 시간에 맞추어 가게에 나타나서는 저와 종업원을 밀어젖히고 캐쉬어에서 현금을 뺏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께서는 숙히 남편이 마켓에 임의적으로 나타나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와 부부공동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유출해 가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Ex Parte Applic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Ex Parte Application이란 춘각을 다루는 신변의 위험이나 재산 손실의 위험에 처할 경우, 일반 공판 신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즉시 판사 앞에 당면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 임시 응급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귀하께

서는 Ex Parte Application 절차에 따라 법원에 출두하기 만 24시간 전에 남편에게 본인이 Ex Parte Application을 통해 법원의 임시 응급 명령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통보하실 필요가 있으며 남편에게 해당 법원의 주소, 공판 시기와 본인이 요청하는 명령의 골자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가정법원에 이러한 응급 공판을 신청하셔야 하며, 남편이 마켓에 접근 금지, 본인이 단독으로 마켓의 회계를 포함한 모든 운영을 관할할 수 있는 권리, 남편의 부부 공동 은행 계좌 사용 정지 처분 명령 등을 신청하셔야 하며 아울러 가정 폭력 사태에 대비하여 귀하와 귀하의 거주지에도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이러한 임시 응급 명령은 그 유효기간이 짧고 반드시 본 공판으로 이어지게 되어있으므로 자세한 서류 양식과 절차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시 응급 명령은 귀하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 분배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판결이 아님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문 70세 넘어 이혼 소장 받았는데 소송 취하할 수 있는지

〈문〉 저는 74세의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와는 열 일곱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할아버지가 횡간에 어느 외국인이 하는 대서소에 가서 이혼 신청을 하여 그 소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내 자아비로 지식들 낳고 살았는데 이제 70이 넘어 이혼이라니 도저히 남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로는 자기도 말이 안 통하게 자세히는 모르나 법원에 한 번 들어간 서류라 어쩔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 신청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혼을 완결시키는 판결문을 받는데 또 이혼 신청의 과정에서, 합의 이혼이 아닐 경우

에 배우자의 과실을 규명해야만 일방 이혼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본인이 이혼 소장을 전달받으신 날로부터 대략 6개월이 지나면 귀하께서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완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한번 법원에 들어간 이혼 신청서를 다시는 취하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혼이 최종 판결문으로 종결되기 이전에, 언제라도 이혼을 신청한 할아버지께서 이혼 신청을 취하하시는 법적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등록하시면 이혼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현재 이혼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본 이혼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 서류 양식과 절차 권해드립니다.

문 돈 많은 사장이라 속여 결혼했는데, 혼인 무효 가능한 지

〈문〉 저는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을 온 20대 여성입니다. 결혼전, 남편이 한국에 나와 저와 저의 가족에게 말하기를 미국에서 3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의 사장이라 자신을 소개했고 저는 또 그 것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 와보니, 남편은 작은 잡화상의 주인이었고 종업원도 3명밖에 없어 거의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남편이 사기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이 인정하는 사기로 인한 혼인 무효의 기준과 범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보통 계약법에서 흔히 인

식되는 사기의 개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를 가능케 하는 사기 행각은 그 사기의 본질이 혼인관계를 유지, 지속시키는 본질적인 요소에 직결되어야만 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무효의 대표적인 예로는, 불임의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경우나 온전히 영주권 취득만이 유일한 결혼의 목적이었을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판례법에 의하면, 개인의 수입이나 비즈니스에 관한 허위 발언, 개인의 혼전 성관계 사실 은폐, 개인의 심한 알코올 중독이나 술 주벽에 대한 사실 은폐 등은 캘리포니아 주 가정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무효를 요청할 수 있는 사기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 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회답은 헤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